

1998. 5. 30

너와나의 절약정신 국가경제 되살린다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3707-9337/8 / 전송(02)3707-9349
 처리부서 : 소비자보호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9층) 계장 박성혜, 담당 정희숙

문서번호 소비 55160-680
 시행일자 1998. 5. 20.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
소비자보호과장 전 결		
유통지도계장		법무담당관 심사필
		등기발송요망
기안	정희숙	

1998. 5. 20

1998. 5. 30

제목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조치

1. 서초경찰서 수사61110-1815('98. 3. 10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대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코자 합니다.

가. 행정처분내역

등록업체명			위반내역	적용법규	처분내용
상 호	소재지	대표자	○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조건으로	○ 제45조 제1항 제3호	영업정지 30일 ('98.6.10~ '98.7. 9)
(주)베스트넷	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2번지	토마스앤소니 브랜걸	상품을 구입토록 하여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	○ 제46조 제1항 20호 적용	

- 첨부 1. 서초경찰서 다단계판매업자 위반사항통보서. 1부.
 2. 청문조서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(주)베스트넷 대표 토마스앤소니 브랜걸 귀하

제목 다단계판매업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통보

1. 서초경찰서 수사61110-1815('98. 3. 1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대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.

3. 동처분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.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 라는 행정심판법 제 18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행정 처분 내역

등록업체명			위반내역	적용법규	처분내용
상호	소재지	대표자	○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조건으로	○ 제45조제1항 제3호	영업정지30일
(주)네스트넷	서울시강남구 역삼동662번지	토마스앤소니 드랭걸	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	○ 제46조 제1항도 20호직용	1998.6.10-1998.7.9

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3안)

수신 서초경찰서장

참조 수사과장

제목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통보

1. 서초경찰서 수사61110-1815(98. 3. 10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대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통보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 처분 내역

등록업체명			위반내역	적용법규	처분내용
상 호	소재지	대표자	○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조건으로 상품을 구입토록 하 여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.	○ 제45조제1항 제3호 ○ 제46조 제1항 20호적용	영업정지30일 (’98.6.10~ '98.7. 9)
(주)베스트넷	서울시강남구 역삼동682번지	토마스앤소니 브랜걸			

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4안)

수 신 공보담당관
제 목 시보게제의뢰



1.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된 업체에 대하여 방문
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
이 시보게제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고(안) 1부. 끝.

소비자보호과장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- 405 호

승인 일자 1998. 5월 21일 호		
담당자	김기	김기

다단계판매업자 영업정지공고
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
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
합니다.

1998년 5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상 호 : (주)베스트넷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2번지
3. 대표자 : 토마스앤소니 브랜걸
4. 영업정지기간 : '98. 6.10 ~ '98. 7. 9.
5. 영업정지사유 :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3호